

‘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<https://sminfo.mss.go.kr>)’ 접속

STEP 1. 회원가입 :

홈페이지에 접속 후 **우측 상단 회원가입** (회원정보 및 기업 정보 입력)

STEP 2. 온라인 자료제출 :

(최근 3년 연매출 평균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는 생략하고 STEP 4 부터 진행 가능.)

1. 자료제출사이트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
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자료 제출(WEB제출)
※ 재무제표 및 부가세증명원(2022,2023,2024) /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2024)
2. 자료제출 프로그램 설치하여 국세청에 등록된 인증서를 사용하여
신규이용자 등록한 후 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자료 자료제출
3. 회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전자신고파일 제출
(국세청에 신고한 동일파일)

※ 온라인 자료제출 부분 : 개별 회계(세무)사 요청하면 간편 처리 가능

STEP 3. 제출자료 조회 : 온라인으로 제출한 자료를 항목별로 조회가능

STEP 4. 신청서 작성 : 자료제출 완료 후 신청서 작성

※ 신청서 작성 시 확인서용도는 ‘**공공입찰용**’으로 선택, **원천세를 납부하지 않는 1인 사업장 또는 간편장부대상기업은 본 항목(신청서 작성 화면 하단부)에 필수 체크**

STEP 5. 진행상황확인 : 신청서 작성 후 오류 발생 시 오류 발생 사항 확인

※ ‘소상공인 유예검토’ 대상기업의 경우 [과거 규모 확인절차] 추가 진행(필수)

STEP 6. 확인서 출력/수정 : 확인서 출력 및 수정이 가능

※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“중소기업확인발급신청” 발급절차 안내 매뉴얼 참조(홈페이지 >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> 발급절차 안내 > 개인사업자 > 개인사업자 확인서 발급 절차 매뉴얼(일반))

□ 소상공인 기준(연평균매출액 + 상시근로자수)

『소상공인기본법 제2조』에서 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- (연평균매출액)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『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』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
 -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
- (상시근로자 수)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
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은 10인 미만
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 외의 업종은 5인 미만

<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(제 8조 제1항 관련)>

|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| 분류기호 | 규모 기준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. 식료품 제조업 | C10 |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| |
| 2. 음료 제조업 | C11 | | |
| 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| C14 | | |
| 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 | C15 | | |
| 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| C19 | | |
| 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0 | | |
| 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| C21 | | |
| 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| C23 | | |
| 9. 1차 금속 제조업 | C24 | | |
| 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25 | | |
| 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| C26 | | |
| 12. 전기장비 제조업 | C28 | | |
| 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| C29 | | |
| 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| C30 | | |
| 15. 가구 제조업 | C32 | | |
| 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| D | |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|
| 17. 수도업 | E36 | | |
| 18. 농업,임업 및 어업 | A | | |
| 19. 광업 | B | | |
| 20. 담배 제조업 | C12 | | |
| 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3 | | |
| 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 | C16 | | |
| 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| C17 | | |
| 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| C18 | | |
| 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| C22 | | |

| | | |
|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| C27 | |
| 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| C31 | |
| 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 | C33 | |
| 29. 건설업 | F | |
| 30. 운수 및 창고업 | H | |
| 31. 금융 및 보험업 | K | |
| 32. 도매 및 소매업 | G |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|
| 33. 정보통신업 | J | |
| 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 (수도업은 제외한다) | E(E36 제외) | |
| 35. 부동산업 | L | |
| 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M | |
| 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| N | |
| 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| R |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|
| 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| C34 | |
| 40. 숙박 및 음식점업 | I | |
| 41. 교육 서비스업 | P | |
| 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Q | |
| 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| S | |

비고

1.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2.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참고3

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

| 표준산업분류 | 업종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33409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|
| 46102 중 | 담배 중개업 |
| 46107 중 | 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|
| 46209 중 | 잎담배 도매업 |
| 46333 | 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 |
| 46416, 46417 중 | 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|
| 46463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|
| 4764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|
| 47811 중 | 약국, 한약국 |
| 47859 중 | 성인용품 판매점 |
| 47911, 47912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|
| 47993 중 | 다단계 방문판매 |
| 52991 중 | 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 |
| 56211 | 일반유흥주점업 |
| 56212 | 무도유흥주점업 |
| 58122 중 | 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|
| 58211, 58212, 58219 중 | 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 |
| 63999 중 |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|
| 64 | 금융업 |
| 65 | 보험 및 연금업 |
| 66 |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|
| 68 | 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 |

| 표준산업분류 | 업 종 |
|----------|--|
| | <p>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</p> |
| 76390 중 | 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|
| 711, 712 | 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|
| 731 | 수의업 |
| 73904 중 | 감정평가업 |
| 75330 |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 |
| 75993 |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|
| 75999 중 |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|
| 86 | <p>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</p> |
| 91113 |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|
| 91121 | 골프장 운영업 |
| 9122 중 | 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 |
| 91221 중 |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|
| 91249 |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|
| 91291 | 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 |
| 9612 중 | <p>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</p> |
| 96992 |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 |
| 96999 중 | 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 |
| 기타 | <p>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</p> |